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3호의9서식] <개정 2022. 3. 31.>

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관리번호

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법인명	②사업자등록번호
③대표자 성명	④업태・종목
⑤소재지	

2. 사업연도

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	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

3.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

⑧결손금액	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

4.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

⑩과세표준	⑪세율	⑫산출세액	⑬공제감면세액	⑭차감세액 (⑫-⑬)

5. 환급신청세액 계산

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(⑮=⑫)	⑯차감할 세액 [(⑩-⑨)×세율] [⑯≧(⑫-⑭)]	⑰환급신청세액 (⑮-⑯) (⑰≦⑭)

6.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

⑱ 예입처	⑲ 예금종류	⑳ 계좌번호
은행 (본)지점		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8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8호서식)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 성 방 법

1. ⑧ 결손금액: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
2.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8호서식의 작성방법 2. 및 7.나.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.

3. ⑩ 과세표준 및 ⑬ 공제감면세액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4. ⑪·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.

5. ⑫ 산출세액: ⑩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6.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: ⑬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⑫ 산출세액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
7. ⑯ 차감할 세액
   가. ⑩ 과세표준에서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  나. ⑬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
8. ⑰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9. ⑱ 예입처, ⑲ 예금종류, ⑳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※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과(☎ -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